

복지시설 회계담당자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교육**



**(재)서울복지재단**  
**(심사평가부)**



2007. 2

**김 준 영**

(서울복지재단 심사팀장/공인회계사)





**제1장 사회복지시설 복식부기 회계원리 · 7**

- 1절: 회계의 기초이론 ..... 9
- 2절: 재무회계원리 ..... 17

**제2장 자산 및 부채 · 27**

- 1절: 자산회계 ..... 29
- 2절: 부채회계 ..... 35

**제3장 수익 및 비용 · 39**

- 1절: 수익회계 ..... 41
- 2절: 비용회계 ..... 43

**제4장 결산 · 47**

- 1절: 결산의 개념 및 기본내용 ..... 49
- 2절: 결산 절차 및 방법 .....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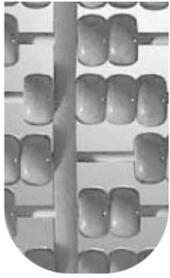
**〈부 록〉 · 61**

- 1. 지방재정법 ..... 63
- 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안) ..... 100





## 제 1 장



# 사회복지시설 복식부기 회계원리



---

# 제 1 장 사회복지시설 복식부기 회계원리

## 제1절 회계의 기초이론

### 1. 회계(Accounting)의 개념

회계란 회계실체가 경제적 사건, 즉 거래발생에 대하여 경제적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하여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회계실체의 경제활동을 기록한 후 정리하여 그 내용을 이용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부기'와의 차이점

부기는 '장부기입'의 준말로 단순히 장부에 기입한다는 의미로서 복식부기를 이해하지 못한 피상적인 수준의 용어이다. 즉 회계는 부기를 기초로 하여 회계실체의 경제활동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 3. 회계정보의 인식

#### 가. 현금주의(cash basis)

- 현금주의는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 즉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 동안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았

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전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 현금주의의 장점

- 단순하여 이해가 쉽다.
- 확실한 측정이 가능하여 객관적이다. 추정 등이 개입되지 않아 자의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 현금주의의 단점

- 정확한 기간손익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익과 관련된 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이 달라(수익비용 대응원칙 위배) 운영보고서에 보고되는 운영차액이 당기의 적정한 운영성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 기간별 재무성과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자산의 순액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산이 과대평가되고 비용이 과소계상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발생주의(accrual basis)

-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한다. 발생주의는 수익·비용의 대응, 기간귀속 등의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되는 현금주의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표 1-1>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점

구 분	현금주의	발생주의
선급비용	비용 인식	자산 인식
선수수익	수익 인식	부채 인식
미지급비용	인식안함	부채 인식
미수수익	인식안함	자산 인식
감가상각	인식 안함	비용 인식

---

○ 발생주의의 장점

-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기간별 성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 발생주의의 단점

- 자의적인 판단과 추정이 개입되어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 정보의 생산비용이 과도할 가능성이 있다.

#### 4. 회계정보의 기록

회계정보의 기록이란 거래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입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를 약칭하여 “부기(簿記)”라고도 한다. 이러한 기록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재정상태보고서나 재정운영보고서와 같은 결산 재무제표를 생성하게 된다.

회계정보의 기록방법은 크게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단식부기

단식부기(single entry book-keeping)란 단일항목(일반적으로 현금)의 증감변화를 기록·계산·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거래나 사건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단식부기에서 재무제표는 현금의 수지증감변화의 기록에 그치며, 현금의 증감변화원인은 각 거래의 적요란에서만 개별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식부기는 비용 및 수익이 기록되지 않고 단순히 타인과의 채권채무관

---

계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현금거래를 주로 하는 비영리기관의 부기방법에 이용된다.

전형적인 단식부기의 예로 가계부를 들 수 있다. 아마 가계부를 쓰는 주부는 콩나물, 두부를 얼마에 사서 현금 얼마를 지출하였다고 쓰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주부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현금을 얼마를 쓰고 현재 얼마나 남았나 하는 것이다. 꼼꼼한 주부라서 현금이 무엇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는지 자세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현재 콩나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두부가 얼마나 있는지는 가계부에서는 알 수 없고 이것이 단식부기의 단점이다.

## 나. 복식부기

복식부기(double entry book-keeping)는 단식부기와 같은 거래의 일원적 인식(즉, 단순한 현금의 증감)이 아니라 거래를 이원적(자금의 원천별 조달과 자금의 구체적 운용)으로 파악하여 차변·대변이라고 불리는 좌우 양변에 거래를 분석하여 기록하는 방법이다. 복식부기에서는 차변과 목의 합계금액이 대변과목의 합계금액과 항상 일치해야 하는데,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복식부기에서는 하나의 거래를 두 가지 요소 또는 그 이상의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 즉, 발생한 거래는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계정에 기입된다.

두 가지 이상의 계정을 병행하여 동시에 기록함으로써 비로소 현금수지 잔액과 사용별 내역이 동시에 얻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식부기에서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한 회계기록으로부터 최종 목적인 재정상태보고서나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회계실체의 활동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런 점에서 복식부기를 완전부기라고도

---

한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거래에 대한 기록의 차이를 간단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이용료 10,000원이 현금으로 징수된 경우

- 단식부기 : 세입-프로그램 이용료 10,000원
- 복식부기 : (차) 현금 10,000원 (대) 프로그램 이용료수입 10,000원

○ 수용비 및 수수료 10,000원을 지출한 경우

- 단식부기 : 세출-수용비 및 수수료 10,000원
- 복식부기 : (차) 수용비 및 수수료 10,000원 (대) 현금 10,000원

○ 복식부기의 장점

- 재무제표 작성을 통하여 재정상태나 영업성과의 측정이 용이하다.
- 모든 거래의 기록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이루어지므로 그 정확성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기능을 갖는다.
- 통합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발생주의와 결합되었을 때 더욱 향상된다. 예를 들어 복지관 기능보강비를 집행한 경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여 기록함으로써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을 통한 자산의 순액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

## 5. 정부회계의 특성

정부회계의 환경과 관련된 특징 중의 하나는 우선 정부의 활동이 여러면에서 민간 부문의 활동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공공성 추구하고 비영리성이다. 따라서 정부부문은 개인이나 민간기업들이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꺼리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국가와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해야 한다.

## 6. 회계의 목적

### 가. 재무상태 파악

재무상태란 ‘사업을 경영하는데 쓰이는 돈을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상태’ 라고 할 수 있는 바, 기업회계에서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안)에서는 ‘재정상태보고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라는 명칭 사용> 라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하여 파악이 가능하다.

### 나. 경영성과 파악

경영성과란 ‘회계주체가 특정기간동안 사업 활동을 한 결과’를 말하는 바,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안)에서는 ‘재정운영보고서’(operating statement)라는 명칭 사용> 라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하여 파악이 가능하다.

## 7. 회계의 분류

회계의 목적 및 회계보고의 대상에 따라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와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로 분류된다. 정부회계와

---

관련한 양자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조직의 외부에 존재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측정·보고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회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부회계와 관련하여 재무회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예산과 재정에 관한 정보

재무회계는 정부조직의 재무상태와 조직의 활동, 재무상태의 변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2) 외부이용자를 위한 정보

재무회계는 주로 납세자, 주민, 상위 조직의 책임자, 투자자, 채권자 등 외부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3) 행정책임에 관한 정보

재무회계는 외부 이용자가 행정조직의 맡은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책임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

### 나. 관리회계

관리회계란 조직의 관리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보고 목적의 회계라고 할 수 있다.

#### 1) 원가와 효율성에 대한 정보

관리회계는 대부분 원가에 대한 정보와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회계라는 용어 대신에 원가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 2)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관리회계 정보는 조직 내부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에 보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고되더라도 극히 일부분만이 보고된다.

## 3) 기획과 통제에 관한 정보

관리회계정보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에 따라서는 관리회계 정보를 산출하지 않는 데도 있다.

관리회계정보는 기획과 통제를 위한 정보이므로 재무회계정보와는 달리 화폐가치로 표현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하기도 한다. 관리회계 정보의 가장 큰 기능은 기획과 통제이다. 물론 기획과 통제를 위해 재무회계정보도 사용되지만 주로 관리회계정보가 사용된다.

<표1-2>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비교

구 분	재무회계	관리회계
• 목 적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내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 주요 이용자	주민·납세자·채권자·지방의회·시민단체 등	내부관리자, 상급기관 등
• 시기적 초점	과거지향적(과거의재무성과)	미래지향적(과거+현재+미래)
• 기 간	비탄력적(1년 또는 반년)	탄력적(시간단위, 연단위 가능)
• 보 고 서	요약보고서	세부보고서
• 활동의 범위	분야가 명확히 정의됨	분야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음

---

## 제2절 재무회계 원리

### 1. 복식부기 회계제도 개념

복식부기회계제도는 경제주체에 경제적 사건(거래)이 발생하면 이를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에서 복식부기의 기록원리(거래의 8요소)에 의거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기록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복식부기회계는 기록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오류가 검증되는 기능을 가진 제도로서 회계기간 종료 후에는 재정운영의 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의 변동(자산, 부채, 순자산)내역을 담은 재무제표 등을 산출(재무회계결산)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제도이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시행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제정(안)에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2조(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 
4. 재무보고서의 작성기준
  5. 재무제표의 양식
  6. 그 밖에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2. 거래 및 분개

### 가. 거래의 개념

복식부기 회계에서의 거래(transaction)란 ‘자산·부채·순자산이 변동하는 사건’이다.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500,000원 지출했다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여 자산·부채·순자산에 변화를 가져오므로 회계상의 거래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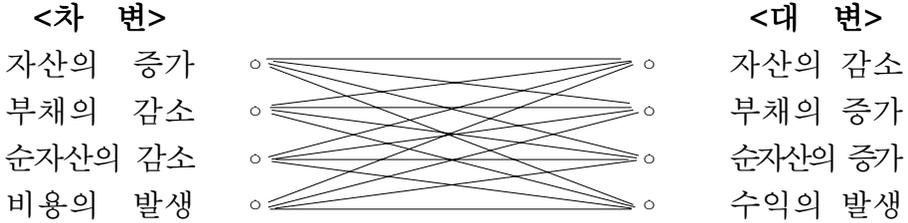
주의할 점은 물품의 주문을 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는 “거래를 했다”라고 하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물품을 주문한 것만으로는 계약을 주문한 순간에 물품이 시설에 들어와 자산이 증가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금을 분실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실된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지만 각각의 경우 현금이나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여 변화가 있었으므로 회계에서는 이를 모두 거래로 취급한다.

### 나. 분개의 법칙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의 8요소 결합관계에 의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에 기록(分介; journalizing)하게 되는데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의 8요소의 결합관계>



<분개유형>

(유형1) 자산증감 : 현금 5백만원을 주고 비품을 구입

(차) 자산의 증가(비품) 5백만원 (대) 자산의 감소(현금) 5백만원

(유형2) 자산감소·비용발생 : 직원 급여 4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차) 비용의 발생(급여) 4백만원 (대) 자산의 감소(현금) 4백만원

(유형3) 자산증가·수익발생 : 시설 후원금 2백만원을 수입

(차) 자산의 증가(현금) 2백만원 (대) 수익의 발생(후원금) 2백만원

(연습1) 법인으로부터 1백만원을 차입하고 이를 예금

(연습2) 임차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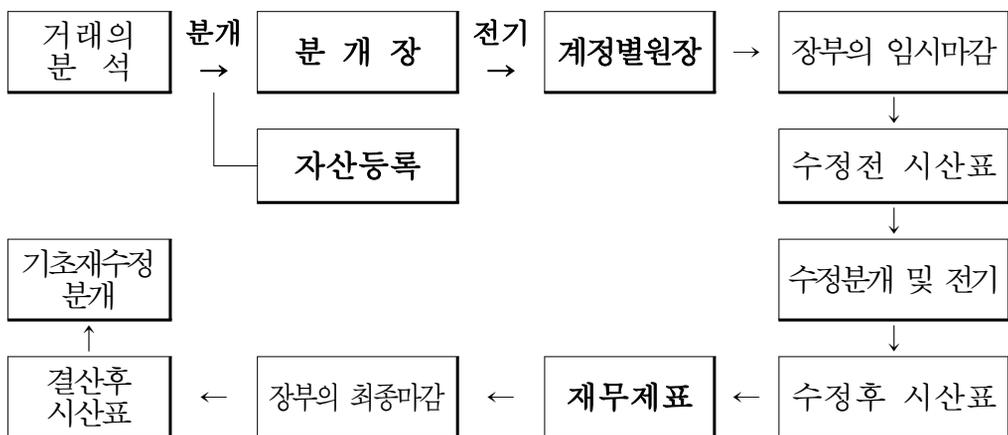
다.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

회계상의 모든 거래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 차변요소와 대변요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차변요소의 금액과 대변요소의 금액이 같게 되는데 이것을 거래의 이중성(duality)이라 하며, 거래의 이중성으로 인해 결국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은 일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대차평균의 원리」라 한다.

### 3. 회계의 순환과정

복식부기의 목적은 거래나 사건을 분개를 통해 차변과 대변으로 각각 기록하여 궁극적으로는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를 비롯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회계의 순환과정을 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리 흐름도>



#### 가. 분개장

- 분개장은 회계자료를 인식하고 측정하여 최초로 기록하는 장부
  - 하나의 거래를 원인과 결과로 구분하여 따로 기록
  - 거래내역의 발생 순서별로 기록

#### 나. 원장과 전기

- 1) 계정별원장 : 계정과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모아 놓은 회계장부
- 2) 전 기 : 분개의 내용을 각 계정별로 집계하기 위하여 해당 계정에 이기

- 
- 분개의 내용만 정확하면 전기는 전산상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수월함

#### 다. 시산표, 재무제표 작성

- 1) 시산표(試算表; trial balance) : 총계정원장에 있는 모든 계정의 차변 금액과 대변금액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한 표
  - 분개장과 총계정원장 기록의 정확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 2) 재무제표 : 거래자료를 활용하여 경영활동의 결과를 분석한 각종 재무회계정보보고서

### 4. 재무제표의 작성

#### 가.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계실체의 자산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것인바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은 위탁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책임을 지게 된다.

#### 나. 재무제표의 기본전제

##### 1) 회계실체의 가정

회계실체의 가정은 특정 회계실체를 외부인 또는 외부의 회계실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회계단위로 간주하고 특정 회계단위의 입장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정 실체가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당해 실체에 관한 정보만을 포함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실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

있어 그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할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회계단위를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회계단위를 별개의 회계실체로 간주하고 독립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 2) 화폐단위 측정의 가정

화폐단위 측정의 전제란 회계실체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나 경제적사건을 화폐단위를 이용하여 측정·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계실체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거래나 사건을 의미 있는 정보로 측정·보고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치척도가 필요한데, 명목화폐단위를 가장 적합한 척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 회계실체 계속의 가정

회계실체 계속의 가정은 일반적으로 회계실체가 장기간 존속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회계실체는 그 경제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필요성도 없다고 가정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제반 영업환경으로 인해 기업의 영속성이 제한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영속성이 보장되므로 회계실체 계속의 가정이 매우 현실적인 회계공준이 되고 있다.

## 4) 기간별 보고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전제란 한 회계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기간의 인위적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에 대해 회계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

다. 회계실체의 이해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적시성이 있는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회계실체의 경영성과를 특정 회계기간에 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회계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기간으로 구분하고 각 회계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간별 재정상태,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기업의 특성에 맞게 회계기간을 임의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회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조에 의거 회계연도를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간(출납폐쇄기한 포함)으로 정하고 있다.

#### 다. 재무제표의 종류

- 1) 재정상태보고서 : 특정시점의 재정상황을 표시(stock의 개념)
  - ▶ 자산·부채 구조, 유동성, 행정서비스 등 평가
- 2) 재정운영보고서 : 회계기간 동안의 운영 결과를 표시
  - ▶ 과거의 경영성과 및 정책결정 활용
- 3) 현금흐름보고서 : 회계기간 동안의 현금수지를 표시
- 4) 순자산변동보고서 : 순자산 변동상황을 표시

<표1-4>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비교

정보의 성격	기업회계	지방자치단체회계
재무상태(재정상태)	대차대조표	재정상태보고서
경영성과(운영성과)	손익계산서	재정운영보고서
자본(순자산)의 변동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의 내용	현금흐름표	현금흐름보고서

## 라. 구성요소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재무제표의 구성요소는 재정상태보고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순자산과 재정운영보고서의 구성요소인 수익, 비용, 운영차액으로 구분한다.

1) 재정상태보고서 : 자 산 = 부 채 + 순자산

※ 순자산 : 전년도 순자산 + 당해년도 운영차액 + 순자산의 증가, 감소

### ■ 개념정의(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제정안 제11조)

- 자 산 :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 또는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 부 채 :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
- 순자산 :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

2) 재정운영보고서 : 수익 - 비용 = 운영차액

※ 운영차액 : 순자산 증감 반영(잉여금 또는 결손금)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자 산	부 채		비 용	수익
	순자산	←	운영차액	

### ■ 개념정의(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제정안 제27조)

- 수 익 :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

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  
단, 자본거래에 의한 순자산 증가는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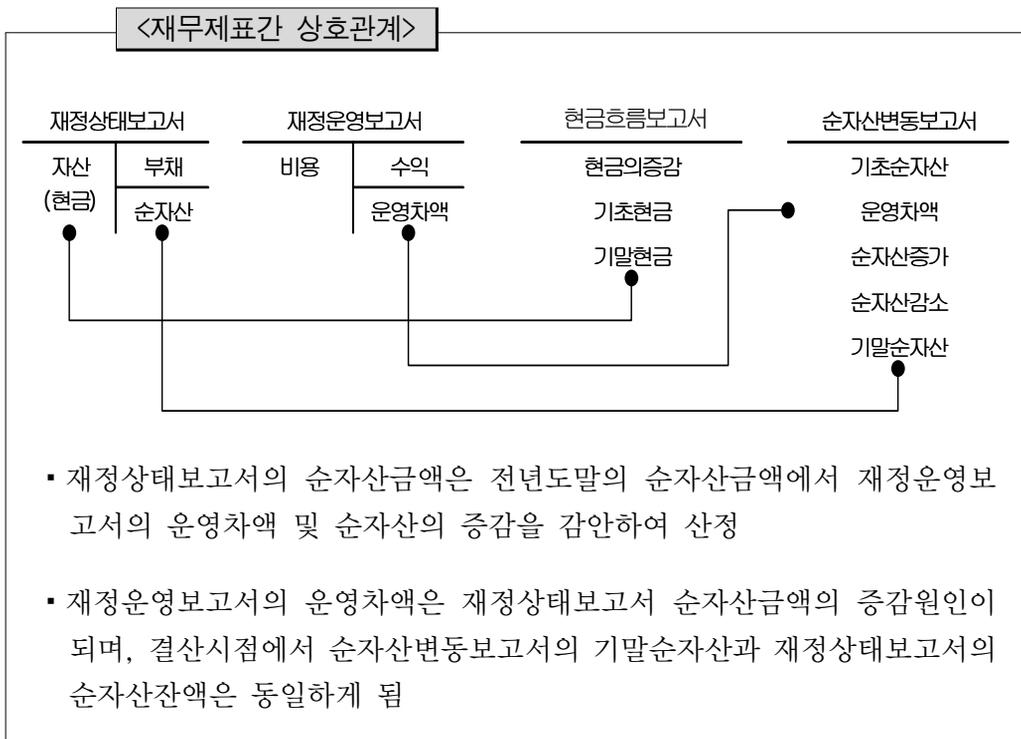
- **비 용** :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감소

3) 현금흐름보고서 : 기말현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재정상태보고서)

- ① 정상활동에 의한 자금흐름 :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 ② 투자활동에 의한 자금흐름 : 자금의 용자 및 회수, 시설 취득 활동 등
- ③ 재무활동에 의한 자금흐름 : 자금의 차입 및 상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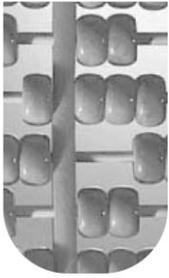
4) 순자산변동보고서 : 순자산(재정상태보고서) = 기말순자산

- 기말순자산 = 기초순자산+운영차액+순자산증가-순자산감소





## 제 2 장



# 자산 및 부채



## 제 2 장 자산 및 부채

### 제1절 자산회계

#### 1. 자산의 개념

##### 가. 자산의 정의

자산(assets)이란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과 함께 서비스 잠재력(service potential)을 창출하는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수금의 경우 미래에 현금으로 회수될 것이기 때문에 현금 유입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어 자산으로 분류된다.

##### 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상의 자산 분류

**14조(자산의 분류)**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용도별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부속명세서에서 표시한다.

**제15조(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1년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기타유동자산 등을 포함한다.

**제16조(투자자산)** ①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②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과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기타투자자산 등을 포함한다.

**제17조(유형자산)** ① 일반유형자산은 1년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을 포함한다.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①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건설중인기타비유동자산 등을 포함 한다.

② 제1항의 무형자산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구입비, 전산프로그램개발비 등을 포함한다.

## 2. 유동자산 중 유의사항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과 현금성자산으로 크게 분류되며,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상품이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현 금

- 통화, 통화대용증권 (지폐,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공사채이자표 등)
- 보통예금(공금예금)

○ 현금성자산

- 취득시 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 (국공채, 환매채 등)
- 취득시 3개월 이내의 만기 계약을 가진 단기금융상품

2)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이란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으로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며, 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은 그 내용을 주식으로 기재한다. 반면에 여유자금의 운용 목적이 아닌 보관 등의 편의를 위한 보통예금 등은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과예금으로 분류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채기금 등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립예치금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주식으로 기재한다. 즉, 단기금융상품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채(RP)] 등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처리 사례】**

〈사례1〉 정기예금 불입으로 인한 단기금융상품 증가

차변) 단기금융상품 ×××      대변) 현금과예금 ×××



---

○ 일반미수금

-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을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

○ 미수수익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된 수익 중 미회수액을 의미하며 주로 정기예·적금과 장·단기대여금, 용자금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 임대료의 미회수분인 미수임대료 등이 있음

※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구분

- 미수금은 해당 권리의무가 확정되어 대금만 미회수된 확정채권의 의미를 가지지만, 미수수익은 시간경과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 미확정채권임
- 따라서 임대료의 경우 회수기일이 경과 했다면 미수수익이 아닌 미수금으로 재분류해야함

【회계처리 사례】

〈사례〉 원금 100만원을 이자율 6%의 정기예금 통장을 2005년 4월1일에 개설하여 금고에 예치한 경우 12월31일 결산시점 회계처리 (매6개월마다 이자수취약정)

차변) 미수수익 15,123원                      대변) 이자수익 15,123원

※  $1,000,000\text{원} \times 6\% \times 92\text{일} (10/1 \sim 12\text{월}31) / 365\text{일} = 15,123\text{원}$

○ 선급비용

- 지출한 비용 중 1년 이내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지출금으로서 선지급한 비용 중 기간 미경과로 차기 이후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산으로 대체처리하는 경과계정

- 
- 주로 지급이자, 보험료, 임차료 등을 선지급한 경우에 해당

**【회계처리 사례】**

〈사례〉 임차료를 선지급한 경우(1년단위 사용료 50만원을 7/1에 선 지급한 경우)

**(제1안으로 회계처리시)**

- ① 선지급시점 회계처리(7/1)  
차변) 임차료 50만원                      대변) 현금과예금 50만원
- ② 회계연도말 회계처리(12/31)  
차변) 선급비용 25만원                      대변) 임차료 25만원
- ③ 차년도6/30(임차기간 종료시점) 회계처리  
차변) 임차료 25만원                      대변) 선급비용 25만원

**(제2안으로 회계처리시)**

- ① 선지급시점 회계처리(7/1)  
차변) 선급비용 50만원                      대변) 현금과예금 50만원
- ② 회계연도말 회계처리(12/31)  
차변) 임차료 25만원                      대변) 선급비용 25만원
- ③ 차년도6/30(임차기간 종료시점) 회계처리  
차변) 임차료 25만원                      대변) 선급비용 25만원

---

## 제2절 부채회계

### 1. 부채의 개념

#### 가. 부채의 의미

회계에서는 부채(負債: liabilities)를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다른 회계실체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회계실체의 현재의무로부터 발생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바, 발생주의회계 하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같이 향후에 지급해야 할 의무도 부채로 인식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상의 부채 분류

**제21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는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한다.

**제22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을 포함한다.

**제23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포함한다.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부채를 말하며 퇴직급여충당금 및 기타비유동부채 등을 포함한다.

## 2. 부채의 주요 종류

### 1)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자산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불금액으로 한다. 비용과 관련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지불액은 미지급비용에서 처리한다.

#### 【회계처리 사례】

7월 5일 : 자산취득비예산으로 업무용 컴퓨터 1대를 1,300,000원에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아 검수확인

7월 31일 : 위의 컴퓨터 구입대금을 지급함

#### ○ 7월 5일

(차변) 집기비품 1,300,000 (대변) 일반미지급금 1,300,000

#### ○ 7월 31일

(차변) 일반미지급금 1,300,000 (대변) 현금과예금 1,300,000

### 3) 선수수익

선수이자, 선수임대료와 같이 일정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부에 대한 선수금액으로서 시간이 경과하면 선수수익으로 계상한다.

선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먼저 부채로 계상한 후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과 반대로 먼저 수익으로 계상한 후 기간경과에 따라 부채로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선급비용의 회계처리 사례 참조)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일 현재 시설의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한 후 실제로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시켜야 한다.

**【회계처리사례】**

〈2006년말 현재〉

- 복지시설의 직원이 회계연도 말에 일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추계액은 3억 5천만원으로 추정

〈2007년 3월 10일〉

- 직원 2인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3천만을 지급

〈2007년말 현재〉

- 직원 전원 퇴직시 퇴직금 추계액이 4억 2천만원으로 추정

○ 2006년 12월 31일

(차변) 퇴직급여 3.5억원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3.5억원

○ 2007년 3월 10일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3천만원 (대변) 현금과예금 3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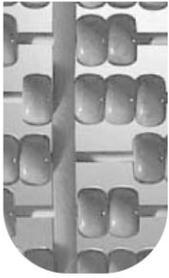
○ 2007년 12월 31일

(차변) 퇴직급여 1.0억원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억원

※ 2007년말 퇴직급여추계액 4.2억원 - (2006년말 퇴직급여추계액 3.5억원 - 2007년 중 퇴직자 퇴직금 추계액 3천만원) = 1.0억원



### 제 3 장



## 수익 및 비용



## 제 3 장 수익 및 비용

### 제1절 수익회계

#### 1. 수익의 개념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에서 수익이란 복지시설에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형태로 나타나며,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자본거래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회계에서는 비용의 반대급부로 이루어지는 수익은 극히 적고, 의존재원과 조세권 발동에 의한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과 엄격히 대응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상의 수익 분류

**제30조(수익의 분류)** ①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한다.

②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한, 자체적인 징수활동에 의해 조달된 수익으로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을 포함한다.

③ 정부간이전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상위 정부의 교부에 의해 조달된 수익으로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 국고

보조금수익, 시도비보조금수익 등을 포함한다.

④ 기타수익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을 말한다.

**제32조(경상세외수익)** ① 경상세외수익은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을 말한다.

② 경상세외수익은 재산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수익, 징수교부금수익, 이자수익을 말한다.

**제33조(임시세외수익)** ① 임시세외수익은 세외수익 중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② 임시세외수익은 국·공유재산매각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및 기타임시세외수익 등을 포함한다.

**제34조(기타수익)** ① 기타수익의 과목으로는 회계간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평가이익, 외환차익, 기타수익 등을 포함한다.

---

## 제2절 비용회계

### 1. 비용의 개념

정부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원가(Cost)와 비용(Expense)은 보통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별이 필요한 개념이다. 원가는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기 위하여 희생 또는 사용된 자원이나 용역을 화폐가치로 표현한 금액으로 자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비용은 원가 중 그의 자산적인 유용성이 소멸된 경우 즉, 소멸된 원가(expired cost)로서 당해 기간의 수익에 대응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2. 비용의 분류

비용의 분류는 크게 성질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성질별 분류는 집행결과를 비용의 성질을 감안하여 비용을 분류한 계정과목(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기타비용)을 나타내는 분류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기업회계에서도 이러한 비용의 분류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기능별 분류는 집행결과를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별로 비용을 분류(일반행정, 교통, 소방 등)하여 나타내는 분류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정부회계에 있어서 이러한 비용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제정(안)에서는 재정운영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기능별 분류에 의한 것을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성질별 분류에

의한 것은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부천시와 강남구에서 사용 중인 LADI 시스템에서는 성질별 분류방식에 의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가. 성질별 분류

성질별로 비용을 구분하는 방법은 기업회계에 보편화되어 있는 분류방법으로 이러한 분류방법은 비용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며, 관리회계적 기법을 사용하기에 유용한 분류방법으로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3-3〉 비용의 성질별 분류

중분류	계 정 과 목
인 건 비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
운 영 비	도서구입및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일반유형자산유지보수비, 주민편의시설유지보수비, 사회기반시설유지보수비, 기타자산유지보수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보험료및공제료, 임차료, 차량유지비, 출장비, 연구용역비, 이자비용, 업무추진비, 행사비, 의회비, 위탁대행사업비, 예술단운동부운영비, 공익근무요원운영비, 위원회운영비, 주민자치활동운영비, 의료기관운영비, 징수교부금, 기타운영비
정 부 간 이전비용	자치단체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자단체간부담금, 국가에대한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기 타 이전비용	민간사회보장지원금, 민간및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장학금, 운수업계보조금, 이차보전금, 출연금, 예비군운영보조금, 국제기관부담금, 국외지원금, 전출금비용, 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부담금, 민간에대한부담금, 기타이전비용
기타비용	일반유형자산처분손실, 주민편의시설처분손실, 사회기반시설처분손실, 기타비유동자산처분손실,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 주민편의시설감액손실, 사회기반시설감액손실, 유산자산재해복구비, 자연자원재해복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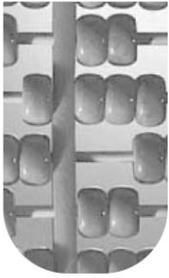
중분류	계 정 과 목
기타비용	재고자산매각손실, 재고자산감액손실,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외화평가손실, 외환차손,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무형자산감가상각비, 미수세금대손상각비, 미수세외수입금대손상각비, 단기대여금대손상각비, 일반미수금대손상각비, 장기대여금대손상각비, 기타비용

### 나. 기능별 분류

비용을 기능별로 구분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나눌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현재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기능별 운영보고서를 살펴보면, 예산과목중 ‘관’에 해당하는 예산구분을 이용하여 기능별 운영보고서를 생성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목 ‘관’에 해당하는 기능구분은 자치단체의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야, 부문)에 대한 재정의 분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 제 4 장



# 결 산



---

# 제 1 장 결 산

## 제1절 결산의 개념 및 기본 내용

### 1. 개념

회계년도 동안의 거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은 “회계처리의 결과 확정 및 재무보고”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회계결산(closing)은 회계연도내의 거래활동을 계수로 확정하는 것이고, 재무보고는 계수로 확정된 결과를 정보이용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필요성

원장의 잔액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일정기간의 경영성과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다든지 비용이나 수익 중에서도 미리 주거나 받거나 하여서 장부상의 기록과 실제 발생한 비용이나 수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부상의 금액을 실제의 금액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결산정리 또는 결산수정이라고 한다. 결산정리를 위해서는 분개를 하고 이를 원장에 기재해야 하는 바, 이를 수정분개(또는 정리분개; adjusting entry)

---

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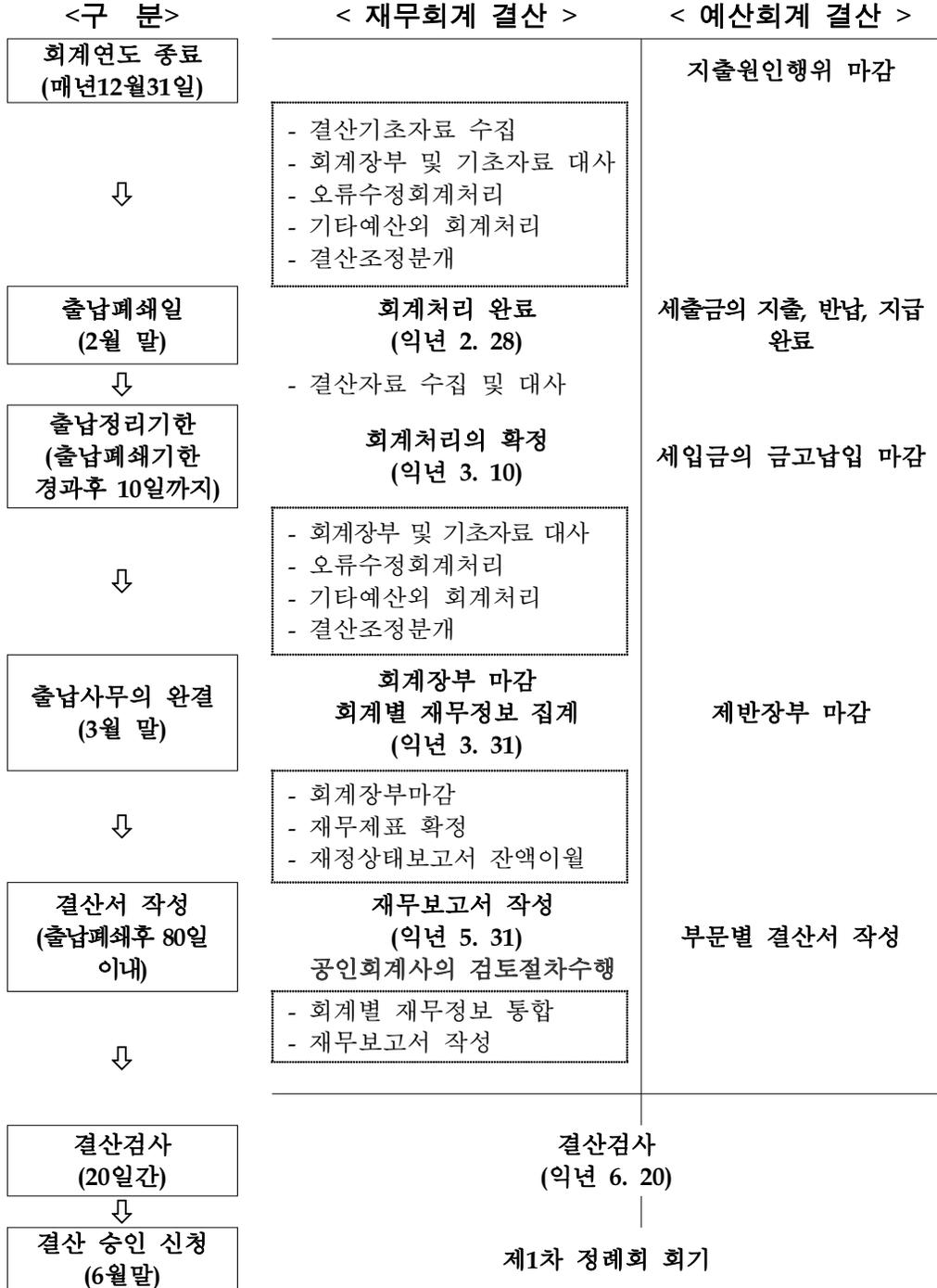
### 3. 회계연도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와 출납폐쇄 기한내의 거래를 포함하여 결산함으로써 현행 예산회계 결산과 통일성을 추구한다.

### 4. 결산내용 및 일정

재무회계 결산서는 재무회계 결산 및 분석결과가 종합 반영된 재무보고서로서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재정분석으로 구성된다.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결산일정 및 절차 〉



## 5.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차이점

현금주의에 기초한 현행 예산회계결산과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회계의 결산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서로 분석(검증)대사되어 수치의 연계성 및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되고,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거래 흐름간 상호 연관성 이해를 위하여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안)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다.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차이점〉

구분	예산회계결산	재무회계결산
결산서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서+세출결산서) 기금결산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현재액보고서 공유재산현재액보고서 물품현재액보고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회계기간	1.1 ~ 12.31 출납폐쇄기간 포함	1.1 ~ 12.31 출납폐쇄기간 포함
기장방식	경상과 자본의 구분이 불명확	복식(자본)회계와 경상회계의 구분
인식기준	(수정)현금주의	발생주의
과목분류	세입, 세출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과목체계	예산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	회계과목 (대분류-중분류-회계과목-관리과목)

---

## 제2절 결산 절차 및 방법

### 1. 결산정리분개

#### 1) 감가상각비

연초에 비품을 10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면 그 때의 분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차) 비 품                      100만원                      (대) 현 금                      100만원

그런데 연초에 산 비품의 가치가 1년이 지난 12월말에도 똑같이 100만원일까? 그렇지 않다. 유형자산은 시간이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손익계산과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1년동안 발생한 유형자산의 가치감소분을 결산기말에 기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형자산의 가치감소는 1년 동안 서서히 발생하므로 연중에는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1년동안의 가치감소분을 모아서 연말(기말)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먼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비라는 비용계정의 차변에 기록한다. 그 다음에는 유형자산이 그만큼 감소하였으므로 유형자산의 감소로서 해당 유형자산 계정의 대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간접적인 차감방식인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의 대변에 기록한다.

이와같은 감가상각비에 관한 결산기말의 정리분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실제로 한 회계기간동안 얼마만큼의 가치가 감소했는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액법과 정률법이다.

우선 정액법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대상액(취득원가 - 잔존가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 배분하는 방법이다.

$$\bigcirc \text{ 감가상각비} = (\text{취득원가} - \text{잔존가액}) / \text{내용연수}$$

정률법은 상각률에 잔존가치가 반영되어 있어 상각완료후의 장부가액이 잔존가치와 일치하도록 정률을 계산한 후 미상각잔액에 정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bigcirc \text{ 감가상각비} = \text{직전년도 미상각액}(\text{취득원가} - \text{감가상각누계액}) \times \text{정률(상각률)}$$

$$\bigcirc \text{ 정률(상각률)} = 1 - \sqrt[n]{\text{잔존가치}/\text{취득원가}} \quad (n = \text{내용연수})$$

## 2) 선급비용

보험료, 이자 등 당기에 지급한 비용 중에는 차기에 가서야 비용으로 포함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의 경우 미리 1년분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10월 1일에 1년치 보험료 12만원을 지급했을 때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10/1 (차) 보 험 료           12만원           (대) 현   금                           12만원

그런데 회사의 결산일이 12월 31일이라면 결산시점에서 볼 때 보험 기간은 아직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보험료는 1년분을 지급하였으므로 9개월분을 미리 지급한 것이 된다.

따라서 12월말 결산에서 아무런 정리분개 및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12만원의 보험료는 전부 당기비용으로 기록되어 비용이 9만원만큼 과다계상되는 것이므로 이를 조정해주는 결산정리분개가 필요하다.

12/31 (차) 선급비용      9만원      (대) 보험료                      9만원

### 3) 선수수익

프로그램이용료 등의 당기 현금 수익금액 중에는 차기에 가서야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 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24만원의 프로그램 이용료(6개월분)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결산시점에서는 3개월분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차기의 수입으로 인식하도록 결산 정리분개가 필요하며 그 분개는 각각 다음과 같다.

10/1 (차) 현    금      24만원      (대) 프로그램이용료 수입      24만원

12/31 (차) 프로그램이용료 수입 12만원      (대) 선수수익                      12만원

### 4) 미지급비용

당기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결산시점까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시설에서 6월초에 장비를 임차해서 임차료를 월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9월까지의 임차료를 지급했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분의 임차료는 당기에 부담해야할 성격이므로 결산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산 정리분개가 필요하다.

---

12/31 (차) 임차료      90만원      (대) 미지급비용      90만원

### 5) 미수수익

당기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시점까지 아직 수익으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대한 당기분이자 50만원을 결산기말까지 받지 못했다면 결산시점에는 다음과 같은 정리분개가 필요하다.

12/31 (차) 미수수익    50만원      (대) 이자수익      50만원

### 5) 정산표의 작성

잔액시산표상의 금액에 정리분개의 금액을 가감하여 수익·비용계정은 재정운영보고서란에, 자산·부채·순자산 계정은 재정상태보고서란에 기입한다.

## 2. 각종 장부의 마감

총계정원장은 재정운영보고서계정인 수익·비용 계정과 재정상태보고서계정인 자산·부채·순자산 계정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1) 수익·비용계정의 마감

집합손익 또는 손익계정을 만들어서 회계기간 중 발생한 모든 수익·비용 계정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대체(transfer)라고 하고 대체를 하기위한 분개를 대체분개라고 한다.

결산시에 행해지는 대체분개는 하나하나의 계정마다 일일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수익과 비용을 일괄하여 처리한다.

예를 들면 결산대체분개는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차) 프로그램 이용료수입	200만원	(대) 집 합 손 익	800만원
후 원 금	500만원		
이 자 수 입	100만원		

(차) 집 합 손 익	750만원	(대) 감가상각비	100만원
		인 건 비	600만원
		이 자 비 용	50만원

위와 같은 분개가 행해지면 수익·비용계정은 모두 마감되었지만 이 계정들의 잔액이 모인 손익계정은 마감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손익계정의 잔액을 순자산으로 대체해주는 분개가 필요한 바, 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차) 집 합 손 익	50만원	(대) 순 자 산	50만원
-------------	------	-----------	------

## 2) 자산·부채·순자산계정의 마감

자산의 각계정은 차변에 잔액이 남고 부채의 각계정은 대변에 잔액이 남으므로 차변잔액의 경우에는 동액을 대변에 기록한 후 ‘차기이월’이라고 기재하여 마감하고 반대로 동액을 차변에 기록한 후 ‘차기이월’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계정을 마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기에 거래가 발생하면 바로 기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와같이 자산·부채·순자산 계정의 마감 및 이월절차는 손익계정의 마감과는 달리 분개를 거치지않고 직접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에 기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 3. 재무제표의 작성

총계정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장부의 마감이 끝나면 결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총계정원장의 자산·부채·순자산에 속하는 차기이월액을 한데 모아놓은 이월시산표를 자료로 하여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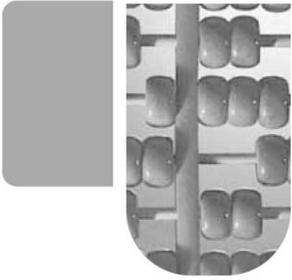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비용에 속하는 각 계정의 전액을 한데 모은 집합손익계정을 자료로 하여 작성된다.

---

<REFERENCE>

1.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이론과 실무(2005.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혁(2002. 이상운저. 법문사)
3. 서울시 복식부기 도입에 관한 연구(2004. 허명순. 시정개발연구원)
4. 알기쉬운 복식부기(2006. 행정자치부)





부 록



---

## 〈부 록 1〉



### 지방재정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세입"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세 제도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효율적인 예산편성·관리기법 및 지방재정운용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무관리방안
4.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5.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보급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지원방안
7. 그 밖에 지방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제6조(회계연도)

-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②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제8조(출납폐쇄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한다.

---

## 제9조(회계의 구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각각 본다.

##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제12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중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제484조·제485조 및 제4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본다.

---

###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 ①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일시차입금)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①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제15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계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출자의 제한)

-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9조(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자문)

-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22조(경비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

**제24조(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요구안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동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6.10.4〉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 <개정 2007.1.3>)**

①시·도지사(특별시장을 제외한다)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

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특별시를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 안의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개정 2007.1.3〉

② 시·도지사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 제30조(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

①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설사업으로서 그 구역 안의 시·군 및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시·도는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한도 내에서 그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그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당해 시·군 및 자치구가 동의한 한도 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할 토목 그 밖의 건설공사를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소요경비를 수탁기관에 납부하고 수탁기관은 공사집행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

###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32조(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장 예산

###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

---

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

---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제38조(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 등)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

②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0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41조(예산의 과목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세항 및 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42조(계속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

---

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6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 **제48조(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예산의 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 제4장 결산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6조(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설치 및 운영)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9조(통합재정정보의 제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이하 "통합재정정보"라 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

기준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분석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수입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

---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 ①지방세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하는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제63조(수납기관)

- ①지방세 그 밖의 세입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4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제66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금의 반환은 환부하는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 제7장 지출

### 제6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경리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69조(지출의 절차)**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0조(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하는 때에는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金庫)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 지출원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다.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2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라 한다)로서 그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

---

상경비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에 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지출원으로 하여금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④일상경비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용선료·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도급경비)** 지출원은 읍·면·동의 출장소 그 밖에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비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都給經費)로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경리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제76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경비 소속 회계연도의 각 항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 제77조(금고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歲計現金)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0조(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81조(공금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수납·보관·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 제9장 시효

###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민법」중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이를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84조(납입고지의 효력)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제10장 채권과 채무

### 제85조(채권·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 및 채무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각각 "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이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채무관리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과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당해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 ①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관리대상이 되는 채권 및 채무의 범위,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채권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장 복권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 제89조(출납원)

- ①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②출납원은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 ③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 제90조(재정의 통합지출)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9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임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당해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당해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

---

당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장 보칙

**제96조(장부의 비치와 보고 등)**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7663호, 2005.8.4>

-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지방채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2006년도 지방채발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③(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본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

---

에는 종전의 규정에 같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174호, 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징수한 지역개발세분부터 적용한다.

## 〈부록 2〉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제정(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공정하게 보고하기 위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 ①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명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보고사항에 관하여 적용된다.

②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준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기준의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실체”라 함은 독립적인 예산권한을 가지고 경제적 자원의 사용 및 통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소유하면서, 회계처리 결과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회계단위를 말한다.
2. “회계실체”라 함은 보고실체의 구성부분으로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특성, 기능 및 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 설정된 회계단위를 말한다.
3. “1년 내”라 함은 재정상태보고서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4. “경제적자원”이라 함은 보고실체의 행정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
5.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6. “내부거래”라 함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상계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내의 각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

**제4조(재무보고의 목적)** ①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회계책임 이행에 대한 평가에 유용한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정상태, 재정운영결과, 순자산변동,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
2. 당기의 수익이 당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또는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 여부

---

에 대한 기간간 형평성 정보

3. 예산 및 기타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제5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복식부기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보고실체와 회계실체의 유형)** ① 보고실체는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자치단체 즉,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로 한다.

②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③ 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체로 구분할 수 있다.

1. 행정형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2. 사업형 회계실체는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

---

된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 제2장 재무보고서

**제7조(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제8조(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보고실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및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된다(재무제표는 주석을 포함한다)

**제9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 보고실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②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③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년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여야 한다.

---

## 제3장 재정상태보고서

**제10조(재정상태보고서)** ①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정부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 능력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② 재정상태보고서의 양식 사례는 별지서식 제1호와 같다.

**제11조(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①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 또는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②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③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 한다.

**제12조(자산 및 부채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 자산으로 보고한다.

③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13조(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

---

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 및 부채는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은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자산의 분류)**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용도별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부속명세서에서 표시한다.

**제15조(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1년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기타유동자산 등을 포함한다.

**제16조(투자자산)** ①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②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과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기타투자자산 등을 포함한다.

**제17조(유형자산)** ① 일반유형자산은 1년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말한다.

---

②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을 포함한다.

**제18조(주민편의시설)** ① 주민편의시설은 1년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주민편의시설은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및미술관, 동물원, 수목원및휴양림, 체육시설, 공연및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및연구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제19조(사회기반시설)** ①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을 말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등을 포함한다.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①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건설중인가타비유동자산 등을 포함 한다.

② 제1항의 무형자산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구입비, 전산프로그램개발비 등을 포함한다.

**제21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는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한다.

---

**제22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을 포함한다.

**제23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포함한다.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부채를 말하며 퇴직급여충당금 및 기타비유동부채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순자산의 분류)** ① 순자산은 정부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액에서 당해 시설투자재원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으로 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잔여금액으로 한다.

## 제4장 재정운영보고서

**제26조(재정운영보고서)** ①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 및 수익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보고서는 정부운영에 대한 이익과 손실의 산정이 아닌 비용과 수익의 내역을

---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② 재정운영보고서의 양식 사례는 별지서식 제2호와 같다.

**제27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①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자본거래에 의한 순자산 증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①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문이나 타 공공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29조(재정운영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재정운영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보고한다.
2.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의 중요성은 금액 및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행정활동과 관련한 비용산출을 위한 계산 및 배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준칙에 따른다.

**제30조(수익의 분류)** ①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한다.

- ②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한, 자체적인 징수활동에 의해 조달된 수익으로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을 포함한다.
- ③ 정부간이전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상위 정부의 교부에 의해 조달된 수익으로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 국고보조금수익, 시도비보조금수익 등을 포함한다.
- ④ 기타수익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을 말한다.

**제31조(지방세수익)** 지방세수익은 지방세법 제5조에 규정한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바탕으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

제32조(경상세외수익) ① 경상세외수익은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을 말한다.

② 경상세외수익은 재산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수익, 징수교부금수익, 이자수익을 말한다.

제33조(임시세외수익) ① 임시세외수익은 세외수익 중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② 임시세외수익은 국·공유재산매각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및 기타임시세외수익 등을 포함한다.

제34조(기타수익) ① 기타수익의 과목으로는 회계간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평가이익, 외환차익, 기타수익 등을 포함한다.

## 제5장 현금흐름보고서

제35조(현금흐름보고서) ①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현금흐름보고서는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보여준다.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용자와 회수, 출자금·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③ 재무활동 자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지방채의 발생 및 상환활동 등을 말한다.

---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① 경상활동은 보고실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용자와 회수, 출자금·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③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지방채의 발행 및 상환활동 등을 말한다.

**제37조(현금흐름의 구분)** ① 경상활동은 보고실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용자와 회수, 출자금·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③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지방채의 발행 및 상환활동 등을 말한다.

**제38조(현금흐름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중의 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회계연도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중의 증가 또는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현금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

## 제6장 순자산변동보고서

**제39조(순자산변동보고서)** ①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 및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포함한다.

② 순자산변동보고서의 양식사례는 별지서식 제4호와 같다

**제40조(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①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증가,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증가, 기타 순자산의 증가 등을 포함한다.

② 순자산의 감소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감소, 기타 순자산의 감소 등을 포함한다.

## 제7장 결산총평, 주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제41조(결산총평)** ① 결산총평에는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책임기술서와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서문,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설명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서문에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보고실체에 대한 주요 특징사항과 필수적인 사항,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요 특징사항과 필수적인 사항은 재무회계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침 및 회계정책 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④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에는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활동의 비교 및 변화원인에 관한 설명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재정분석 및 통계에서는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 및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지표 및 재정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주석)** ①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 및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기준의 각 조항에 제시된 주석사항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 주요 거래내용
2.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3.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보증의 내용
4.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6.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 자산의 세부내용
7.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필수보충정보)** ① 필수보충정보란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예산결산요약표
2.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3. 관리책임자산
4.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명세서

---

**제44조(부속명세서)** ①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② 부속명세서의 종류와 서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45조(결산총평 등의 작성지침)** 제44조 내지 제47조에 의한 결산총평,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 및 양식은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6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순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제47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① 미수채권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수채권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

② 미수세외수입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은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제49조(장기투자증권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①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형자산 중 상각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 사회기반시설의 평가는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에 대한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와 도시철도는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제52조(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해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중 당해 자산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자산을 원상회복 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처리한다.

**제54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이란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5조(지방채증권의 평가)** ① 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 지방채증권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은 차이는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하고, 발행차금은 증권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환입)하고 동 상각액(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가감한다.

**제5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지급규정, 퇴직금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

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57조(채권·재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 장기연불조거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오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 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적절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수익률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58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 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 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③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 및 부채금액이 계약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

**제59조(리스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한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금융리스에 따른 리스자산 및 부채의 평가,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료 비용 등 리스회계 처리에 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준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60조(우발상황)** ① 우발상황이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 우발상황에는 진행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있다. 우발상황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동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나 동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발상황의 내용 및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우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동 이익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61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처리기준을 폐지함

---

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1.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순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한다.
2.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②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을 말한다. 오류의 수정은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이 있다.
    1. 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관련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순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한다.
    2. 오류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오류수정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및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③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또는 오류수정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순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하는 경우, 비교 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기준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개시재정상태보고서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 ③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 기준

---

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 ① 제19조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재무제표 계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특성에 따라 일부 과목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변경사유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의 특례)** 제26조에 의한 기능별재정운영보고서는 부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필수보충정보의 경과조치)** 제43조에 의한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

**제5조(출납폐쇄기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의 특례)**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중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서식 제1호>

## 재 정 상 태 보 고 서

년 월 일 현재

○ ○ 시

(단위:천원)

과 목	당 해 년 도						전 년 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b>자 산</b>												
I.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II.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												
III.일반유형자산												
건물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IV.주민편의시설												
도서관												
...												
V.사회기반시설												
도로												
...												
VI.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												
<b>자산총계</b>												
<b>부 채</b>												
I.유동부채												
단기차입금												
...												
II.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												
III.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금												
...												
<b>부채총계</b>												
<b>순 자 산</b>												
I.고정순자산												
II.특정순자산												
III.일반순자산												
<b>순자산총계</b>												
<b>부채와순자산총계</b>												

<서식 제2호>

## 재 정 운 영 보 고 서(기능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시

(단위:천원)

과 목	당 해 년 도						전 년 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b>I. 비용</b>												
입법및선거												
일반행정												
교육및문화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												
민방위관리												
소방관리												
지원및기타경비												
<b>II. 비용합계</b>												
<b>III. 수익</b>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b>IV. 수익합계</b>												
<b>V. 운영차액</b>												

# 현금흐름보고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시

(단위 : 천원)

과 목	당 해 년 도					전 년 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b>I.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1. 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2. 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기타비용												
<b>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유형자산의 처분												
유가증권의 처분												
대여금의 회수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유형자산의 취득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유가증권의 취득												
...												
<b>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차입금의 차입												
지방채증권의 발행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차입금의 상환												
지방채증권의 상환												
...												
<b>IV. 현금의 증가(감소)</b>												
<b>V. 기초의 현금</b>												
<b>VI. 기말의 현금</b>												

# 순자산변동보고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시

(단위:천원)

과 목	당 해 년 도					전 년 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b>I. 기초순자산</b>												
<b>II. 운영차액</b>												
<b>III. 순자산의 증가</b>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에 의한 누적이익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증가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증가												
기타순자산의 증가												
<b>IV. 순자산의 감소</b>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에 의한 누적손실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 감소												
기타순자산의 감소												
<b>V. 기말순자산</b>												

# 재 정 운 영 보 고 서(성질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시

(단위:천원)

과 목	당 해 년 도						전 년 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b>I. 자체조달수익</b>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b>II. 정부간이전수익</b>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b>III. 기타수익</b>												
<b>IV. 수익총계</b>												
<b>V. 인건비</b>												
공무원급여												
복리후생비												
...												
<b>VI. 운영비</b>												
소모품비												
유지보수비												
업무추진비												
...												
<b>VII. 정부간이전비용</b>												
타자치단체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												
<b>VIII. 기타이전비용</b>												
민간사회복지지원금												
사회단체보조금												
...												
<b>IX. 기타비용</b>												
<b>X. 비용총계</b>												
<b>XI. 운영차액</b>												